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0가단1196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오현일,안성용,안은혜,조금규,박지훈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조은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정선희

2. C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 B와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체결한 2015. 5. 8.자 E 주식 4,463주, 2015. 7. 30.자 990,000원, 2015. 7. 31.자 8,000,000원, 2015. 8. 18.자 4,759,000원 및 2015. 8. 19.자 4,998,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와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체결한 2015. 7. 31.자 4,000,000원, 2015. 8. 3.자 3,300,000원, 2015. 8. 5.자 3,380,000원, 2015. 8. 17.자 3,999,000원, 2015. 8. 18.자 2,891,000원의 각 묵시적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와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체결한 2015. 5. 8.자 E 주식 4,463주의 보관계약, 2015. 7. 30.자 990,000원, 2015. 7. 31.자 8,000,000원, 2015. 8. 18.자 4,759,000원 및 2015. 8. 19.자 4,998,000원의 각 금전보관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와 소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체결한 2015. 7. 31.자 4,000,000원, 2015. 8. 3.자 3,300,000원, 2015. 8. 5.자 3,380,000원, 2015. 8. 17.자 3,999,000원, 2015. 8. 18.자 2,891,000원의 각 금전보관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59,944,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피고 C은 17,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선택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6,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0028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19. ‘소외 D은 원고에게, 가. 소외 F과 합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08,197,853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7.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6.부터, 41,197,853원에 대하여는 2015. 5. 9.부터 각 2019. 9. 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D은 피고 B와 사이에, 2015. 5. 8.자 E 주식 4,463주, 2015. 7. 30.자 990,000원, 2015. 7. 31.자 8,000,000원, 2015. 8. 18.자 4,759,000원 및 2015. 8. 19.자 4,998,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하고, 피고 B에게 위 주식과 금전을 증여하였다.

(2) 예비적 청구

D은 피고 B와 사이에, 2015. 5. 8.자 E 주식 4,463주, 2015. 7. 30.자 990,000원, 2015. 7. 31.자 8,000,000원, 2015. 8. 18.자 4,759,000원 및 2015. 8. 19.자 4,998,000원의 각 주식 및 금전보관계약을 하고, 피고 B에게 위 주식과 금전을 보관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

D은 피고 C와 사이에, 2015. 7. 31.자 4,000,000원, 2015. 8. 3.자 3,300,000원, 2015. 8. 5.자 3,380,000원, 2015. 8. 17.자 3,999,000원, 2015. 8. 18.자 2,891,000원의 각 묵시적 증여계약을 하고, 피고 C에게 위 금전을 증여하였다.

(2) 예비적 청구

D은 피고 C과 사이에, 2015. 7. 31.자 4,000,000원, 2015. 8. 3.자 3,300,000원, 2015. 8. 5.자 3,380,000원, 2015. 8. 17.자 3,999,000원, 2015. 8. 18.자 2,891,000원의 각 금전보관계약을 하고, 피고 C에게 위 금전을 보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공통 청구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D이 피고 B, C에게 위 각 증여계약 또는 각 금전보관계약을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 또는 각 금전보관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서 59,944,8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17,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택적 청구

D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피고 C의 계좌로 16,880,000원을 이체하여 은닉하였는바, 피고 C은 자신 명의 은행 계좌를 D에게 대여하여 주어 D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과실에 의한 방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마. 피고 B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D의 각종 계좌거래내역조회를 통하여, 늦어도 2018. 5. 11.에는 D이 피고 B에게 주식 및 금전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 이상 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자신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하라는 D의 말을 믿고 주식계좌와 은행계좌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고, D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증여계약 또는 각 금전보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사 원고 주장의 위 각 증여계약 또는 각 금전보관계약이 있었고, 그 각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B은 이를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

바. 피고 C의 주장

생활비 통장이 필요하다는 오빠인 D의 말을 믿고 은행계좌를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고, D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증여계약 또는 각 금전보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사 원고 주장의 각 증여계약 또는 각 금전보관계약이 있었고, 그 각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C은 이를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1. D의 각종 계좌를 출력하여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피고 B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이체되거나 피고 B으로 주식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D의 피고 B에 대한 주식 및 금전 증여사실 또는 주식 및 금전보관사실 및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D이 피고들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주식 및 각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일자에 D과 피고들 사이에 각 증여계약 또는 각 금전보관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D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